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2003.01.01
 1차 개정 : 2006.04.11
 2차 개정 : 2009.11.02
 3차 개정 : 2012.09.01
 4차 개정 : 2015.04.23
 5차 개정 : 2015.12.01
 6차 개정 : 2016.07.01
 7차 개정 : 2019.08.01
 8차 개정 : 2021.01.01
 9차 개정 : 2022.08.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임직원이 회사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등에 의하거나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직원대표”란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회사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회사의 각 본부(실)가 수용된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제3조(안전보건관리체계)**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행사한다.
- ② 본부(실)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
- ③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본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 ④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종합 추진한다.
- 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 제3조2(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4조(임직원의 의무) 임직원은 스스로 안전확보 및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회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본부(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사업장내에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본부(실)장은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조직과 직무

-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본부(실)장은 해당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본사의 관리책임자는 회사 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업무를 총괄한다.
- ③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각 사업장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팀/센터/그룹 등 조직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는 관리감독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3.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4.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보건역)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역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선임보고) 관리책임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역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역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과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은 직원대표, 직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사업장 직원, 사업장 대표, 사업장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구성하며, 구성원수는 최소 8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⑤ 회의는 근로자(직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직원대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4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보건 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사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2(교육강사)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무경험을 보유 한 자(강의는 유관 분야에 한함)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소방공무원 또는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가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
 - 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제15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직무교육의 면제 등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안전관리

제16조(안전조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전자파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하역 및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
5. 건축물, 작업장, 통로 등에 의한 위험
6. 기타 업무상 위험

제17조(위험성평가) 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책임자는 제1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및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1. 실시계획서의 작성과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청취조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 유해위험요인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3년 이상 보존)
 - 가.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나. 위험성 결정의 내용
 - 다.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라. 그 밖에 위험성 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1년 마다 실시한다.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9조(시설위험방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물·구축물의 난간, 옥상, 계단, 간판 등에서의 추락 또는 미래의 위험이 있는 시설
2. 전기에 의한 감전, 누전, 단락 등의 위험이 있는 시설
3. 승강기에서의 적정하중 초과, 정전, 고장 기타 비상시의 위험이 있는 시설
4. 기타 위험방지 조치가 필요한 시설

제4장 보건관리

제20조(보건조치) 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의 건강유지, 증진과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환기·채광·조명·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 미달로 인한 건강장해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21조(보건시설) 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보건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건강관리실 운영) ①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기관은 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실(의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건강관리실에는 응급 처치나 경미한 치료에 필요한 기구 및 약품을 항상 비치하고 직원의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투약 또는 치료의 업무를 행한다.

제23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책임자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장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 사업장
2. 연속 업무를 행하는 옥내 사업장
3.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옥내 사업장
4.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5. 기타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장

②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에 있어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여 자체적인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③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장은 측정결과를 3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측정자, 측정일, 측정대상, 측정방법, 측정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여 위원회 의견을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2(휴게시설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작업중지 등)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24조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애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건강진단) ① 본사의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검진”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검진은 당해 연도의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를 지도하여야 한다.
- ④ 검진결과 직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의 지침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2(특수건강진단 등) ① 본사의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본사의 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사의 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본사의 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을 따른다.

제26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직원이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 시켜야 하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검진비용) 이 규정의 제25조 및 [제25조2](#)에 의한 검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산업재해 조사보고 및 처리

제29조 (산업재해조사) ①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관계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발생원인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대하거나 이례적인 산업재해 발생시는 본사에서 조사하거나 해당 사업장 관리 책임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직접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3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1조(산업재해처리) ①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간부직으로 산업재해 수습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상자의 처리와 피해시설을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세부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산업재해 분석) ①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 및 경위를 세밀히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본사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며 동일유형의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장에서는 매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무재해운동) 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무재해운동에 협조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서류의 보존)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 ②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작업환경측정 및 직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상벌) ① 무재해목표 달성 등 안전, 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태만히 한 직원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할 수 있다.

제36조(세부사항)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규정의 제정 등) ① 회사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부 칙(제 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11)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02)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23)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30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6.07.0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4조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2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개정 2021.11.19>

산업재해 조사표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위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란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 산재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근로자수	
	④ 업종		소재지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 재해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명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 리번호(사업개시번호)		공정률	%
	⑨ 공사종류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 소				휴대전화		
	국 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 체류자격:		⑪ 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 같은 근속기간	종류업무	년 월		
	⑬ 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⑭ 근무형태	[] 정상 [] 2 교대 [] 3 교대 [] 4 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⑮ 상해종류 (질병명)		⑯ 상해부위 (질병부위)		⑰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 재해발생원인						
IV. ⑳ 재발 방지 계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